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58호 2010. 10. 1. (금)

규 칙	
○ 규칙 제33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2
○ 규칙 제3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5
○ 규칙 제3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11
훈 령	
○ 훈령 제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15
공 고	
○ 공고 제2010-6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4
○ 공고 제2010-6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6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알림마당 → 북구 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인)

2010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337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생활지원과 분장사무 56부터 65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66부터 68까지를 각각 56부터 58까지로 한다.

별표 중 경제진흥과 분장사무 52부터 61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경제진흥과	52. 청소년 연수제 지원 및 취업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53.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54. 구인 구직 신청·접수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55. 공공근로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6.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7. 공공근로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8. 공공근로자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9.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60.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1. 직업안내 사업자 및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별표 중 환경위생과 분장사무 4부터 71까지를 각각 5부터 72까지로 하고, 분장사무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경위생과	4. 녹색성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농수산과 분장사무 7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농수산과	70.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일자리업무가 생활지원과에서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담당으로 이관되고, 친환경무상급식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분장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장 조정(신설)

- 녹색성장 총괄업무 : 기획감사실 → 환경위생과
- 일자리 업무 : 생활지원과 → 경제진흥과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업무 : 농수산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사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합계	합계		500	378	13	36	73
	정무직		1	1			
	일반직		433	330	8	31	64
	기능직		62	45	5	3	9
	별정직		4	2		2	
정무직	구청장		1	1			
일반 반 직	계		433	330	8	31	6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0	18	2	2	8
		행정	20	11	2		7
		의무	1			1	
		시설	3	3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시설·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6급	소계	88	73	2	5
	행정		50	39	2	1	8
	세무		1	1			
	사회복지		1	1			
	전산		1	1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환경		1	1			
	시설		9	9			
	방송통신		1	1			
행정·시설	3		3				
행정·세무	4		4				
행정·환경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녹지	1		1				
행정·사서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간호·의료기술	1				1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일 반 직	7급	소 계	126	100	2	10	14
		행 정	62	47	2	1	12
		세 무	7	7			
		사 회 복 지	7	6			1
		전 산	2	2			
		농 업	2	2			
		녹 지	2	2			
		해 양 수 산	1	1			
		보 건	5	4		1	
		의 료 기 술	2			2	
		간 호	4			4	
		환 경	2	2			
		시 설	16	16			
		공 업	1	1			
		방 송 통 신	1	1			
		행 정·세 무	3	3			
		공 업·환 경	1	1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보 건·간 호	1				1
		보 건·약 무	1				1
		행 정·환 경	1	1			
		행 정·시 설	2	2			
		행 정·사 서	1	1			
	행 정·농 업	1					1
	8급	소 계	132	99	1	12	20
	행 정	49	34	1		14	
	세 무	9	9				
	사 회 복 지	7	2			5	
	전 산	3	3				
	농 업	2	2				
	녹 지	4	4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보 건	5	2		3		
의 료 기 술	5			5			
간 호	3			3			
환 경	3	3					
시 설	21	21					
방 송 통 신	3	3					
공 업	2	2					
사 서	1	1					
행 정·세 무	2	2					
행 정·보 건	1	1					
행 정·사 서	3	3					
행 정·환 경	1	1					
행 정·농 업	2	1			1		
행 정·시 설	2	2					
행 정·사 회 복 지	1	1					
공 업·환 경	1	1					
보 건·의 료 기 술	1			1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 계	52	36	1	1	14
		행 정	27	16	1		10
		세 무	2	2			
		전 산	1	1			
		사 회 복 지	3	1			2
		녹 지	0	0			
		환 경	1	1			
		시 설	6	6			
		공 업	2	1		1	
		방 송 통 신	2	2			
		사 서	4	4			
		행정·사회복지	2				2
		공업·방송통신	2	2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기 능 직	계		62	45	5	3	9
	6급	소 계	4	4			
		사무보조	2	2			
		운 전	2	2			
	7급	소 계	9	9			
		사무보조	3	3			
		전화상담	1	1			
		운 전	2	2			
		기 계	2	2			
		전 기	1	1			
	8급	소 계	13	11	1	1	
		사무보조	7	6	1		
		운 전	4	3		1	
		기 계	1	1			
		전 기	1	1			
	9급	소 계	21	15	2		4
		사무보조	10	5	1		4
		전화상담	1	1			
		운 전	5	4	1		
		기 계	1	1			
		토 목	1	1			
		방송통신	1	1			
		농 립	1	1			
		조 무	1	1			
	10급	소 계	15	6	2	2	5
		사무보조	12	5	2		5
운 전		1			1		
전 기		1	1				
보 건		1			1		
별 정 직	계		4	2		2	
	6급 상당	소 계	2	1		1	
		비 서	1	1			
		보건진료원	1			1	
	7급 상당	소 계	1			1	
		보건진료원	1			1	
	8급 상당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직급·직렬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조정(별표)

1) 정원조정

◦ **6급 : 87명 → 88명(증 1명)**

- 행정 : 49명 → 50명(증 1명)

◦ **7급 : 125명 → 126명(증 1명)**

- 행정 : 61명 → 62명(증 1명)

◦ **8급 : 133명 → 132명(감 1명)**

- 행정 : 53명 → 49명(감 4명)

- 시설 : 20명 → 21명(증 1명)

※ 시설(건축) 증 1명

- 녹지 : 3명 → 4명(증 1명)

- 환경 : 2명 → 3명(증 1명)

- 공업 : 2명 → 2명

※ 공업(전기) 감 1명, 공업(기계) 증 1명

◦ **9급 : 53명 → 52명(감 1명)**

- 행정 : 25명 → 27명(증 2명)

- 시설 : 7명 → 6명(감 1)

※ 시설(건축) 감 1명

- 녹지 : 1명 → 0명(감 1명)

- 환경 : 2명 → 1명(감 1명)

- 공업 : 2명 → 2명

※ 공업(전기) 증 1명, 공업(기계) 감 1명

2) 직렬명칭 변경

· 통신직 → 방송통신직

· 교환직 → 전화상담직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인)

2010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339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생활지원과 단위업무의 23부터 30까지, 단위업무 32를 각각 삭제하고, 단위업무 31, 33, 34를 각각 23부터 25까지로 한다.

경제진흥과 단위업무 42부터 5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42. 무료직업소개 업무	가. 무료직업소개업 신고	기안		○			
	나. 무료직업소개업 변경신고	기안		○			
	다. 무료직업소개업 폐지신고	기안		○			
	라. 사업정지명령	기안		○			
	마. 폐쇄 조치	기안		○			
	바. 과태료부과 징수	기안		○			
43. 유료직업소개 업무	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기안	○			
	나. 유료직업소개업 변경등록	기안		○			
	다.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취소	기안		○			
	라. 유료직업소개업 정지명령	기안		○			
	마. 유료직업소개업 폐지신고	기안		○			
	바. 유료직업소개업 폐쇄조치	기안		○			
	사. 보고 및 검사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자. 유료직업 소개업 및 지도점검	기안		○			
44.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	가. 유무료 직업소개업 및 지도점검	기안		○			
	나. 허위 구인광고 단속	기안		○			
	다. 허위 구인광고 단속실적보고	기안		○			
	라. 유해업소 미성년자 보호대책 수립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45. 청소년 연수	가. 청소년 연수계획 수립	기안		○			
	나. 연수 협약 체결	기안		○			
	다. 연수생 선발·배치	기안		○			
	라. 수당 신청 등 제반사항 보고	기안		○			
46.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업무	가.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 구성 및 운영	기안			○		
	나. 지방고용심의회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시행계획	기안		○			
	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기안		○			
	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기관 지도점검	기안		○			
	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기관 지정에 따른 추진	기안		○			
	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국고 보조금 예산관련 사항	기안		○			
	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총괄현황 보고	기안		○			
	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직업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				
	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기관 행정처분 사항 통보	기안	○				
47.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위탁	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기관 위탁계약 체결	기안		○			
	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위탁통지	기안		○			
	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신청접수·선발·위탁·입소관련 일반사항	기안	○				
	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위탁생 명단 통보	기안	○				
48. 구인·구직 취업알선	가. 취업정보센터 운영	기안		○			
	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구직표 접수	기안	○				
	라.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기안	○				
49.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단계사업별 기본 방향 설정			기안		○	
	나. 단계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다. 공공근로대상자 신청 접수 및 인원 선발	기안		○			
	라.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기안		○		
	마. 공공근로자 임금 지급	기안		○			
	바. 공공근로사업 예산 정산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아. 중도포기자 대체 및 대기자 관리	기안		○			
	자. 사업장 지도, 점검 및 동향 관리	기안		○			
	차. 산재보험 가입 및 재해발생 관련사항 처리	기안		○			
	카. 공공근로사업 홍보 및 기록 보존	기안		○			
	타. 공공근로사업 관련 각종 자료 제출	기안	○				
	파.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일보 및 주보	기안	○				
50. 대학생아르 바이트 알선	가. 대학생아르바이트 알선	기안		○			

환경위생과 단위업무 8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85. 녹색성장 총괄업무	가. 녹색성장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농수산과 단위업무 10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105. 학교급식지원	가. 학교급식지원보조금 신청	기안		○			
	나. 학교급식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위촉	기안					○
	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사항	기안					○
	마. 학교급식지원 계획통보	기안		○			
	바. 학교급식지원대상 실태조사	기안		○			
	사. 학교급식지원보조금 정산	기안			○		
	아. 학교급식지원 신청접수	기안		○			
	자. 급식센터운영기본계획	기안					○
	차. 분기별 학교급식실태조사와 평가	기안		○			
	카. 학교급식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	기안		○			
	타. 지역친환경농산물관리	기안		○			
	파. 식재료관련 학생건강조사 및 평가	기안		○			
	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교육과 체험	기안		○			
	가. 학교급식 소위원회 운영관련	기안		○			
	나. 학교급식센터 운영일반	기안		○			
다. 지역먹거리 정책입안	기안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농수산물과 친환경무상급식담당 신설 및 일자리, 녹색성장 총괄 업무의 조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 총괄업무 이관 : 기획감사실 ⇒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업무 이관 : 생활지원과 ⇒ 경제진흥과

다. 농수산물과 친환경무상급식 신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북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실과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합계			378		
기획감사실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8	행정7, 시설1	
		8급	5	행정4, 행정·보건1	
총무국과	국합계		166		
	총무	계		27	
			정무직	1	구청장
	과	일반직	소계	19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7	행정7
			8급	3	행정2, 행정(계약)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5
		6급		1	사무보조1
	7급	2		사무보조2	
	8급	2		사무보조1, 운전1	
	별정직	소계	2		
		6급상당	1	비서요원1	
		8급상당	1	비서요원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회 계 정 보 과	계		31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전산1, 방송통신1	
		7급	8	행정2, 전산2, 방송통신1 , 시설1, 행정·시설1, 행정·세무1	
		8급	8	행정4, 전산2, 방송통신2	
	9급	3	행정1, 방송통신2		
	기능직	소 계	6		
		6급	1	운전1	
		7급	1	전화상담1	
		8급	2	사무보조2	
		9급	2	운전1, 전화상담1	
	문 화 홍 보 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4, 행정(계약)2	
8급			7	행정4, 행정·시설1, 행정(계약)1, 공업1	
9급			3	행정1, 공업· 방송통신(계약)2	
기능직		소 계	4		
		7급	1	기계1	
		8급	2	사무보조1, 전기1	
	10급	1	사무보조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평 생 교 육 과	계		27		
	일반직	소 계	26		
		5급	1	행정1	
		6급	8	행정6, 행정·사서1, 행정(계약)1	
		7급	2	행정1, 행정·사서1	
		8급	8	행정1, 행정사서3, 행정(계약)1, 사서1, 전산, 공업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1	
	세 무 과	계		31	
		일반직	소 계	27	
5급			1	행정1	
6급			5	행정·세무4, 세무1	
7급			9	세무7, 행정·세무2	
8급			10	세무9, 행정·세무1	
기능직		소 계	4		
		7급	1	사무보조1	
		8급	2	사무보조2	
		9급	1	사무보조1	
민 원 지 적 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2		
		5급	1	시설1	
		6급	4	행정2, 시설2	
		7급	6	행정3, 시설2, 행정·시설1	
		8급	7	행정5, 시설2	
	9급	4	행정3, 시설1		
	기능직	소 계	3		
		9급	3	통신1, 사무보조2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직 렬	
생 활 지 원 과 국 사 회 복 지 과 경 제 진 흥 과	국 합 계		82		
	생 활 지 원 과	계		16	
		일반직	소 계	16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5	행정1, 사회복지4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사 회 복 지 과	계		14	
		일반직	소 계	13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시설1
			8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 계	1	
	9급		1	사무보조1	
	경 제 진 흥 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5	행정3, 행정(계약)1, 공업1	
8급			3	행정3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사무보조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환경위생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보건2, 환경1, 행정·환경1
		7급	8	행정1, 보건4, 환경2, 공업·환경1
		8급	7	행정1, 보건2, 환경2 , 시설1, 공업·환경1
9급	1	환경1		
환경미화과	계		18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3	행정2, 행정·환경1
		8급	4	행정2, 환경1, 행정·환경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6	
		6급	1	운전1
		7급	2	운전2
		8급	1	운전1
9급		2	운전2	
도	국 합계		112	
도시건설국	계		24	
	일반직	소계	21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시설·녹지1
		6급	5	행정1, 시설2, 녹지1, 행정·녹지1
		7급	5	행정1, 시설2, 녹지2
		8급	7	시설3, 녹지4
		9급	2	시설2
	기능직	소계	3	
		9급	1	농림1
10급		2	사무보조1, 운전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교 통 행 정 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1, 시설1, 행정·세무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2	
		6급	1	사무보조1
		9급	1	조무1
	건 설 과	계		22
일반직		소 계	17	
		5급	1	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7급	4	행정1, 시설3
		8급	6	행정2, 시설3, 행정·시설1
		9급	3	시설2, 행정1
기능직		소 계	5	
		7급	1	전기1
		9급	2	기계1, 토목1
		10급	2	사무보조1, 전기1
건 축 주 택 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7	
		5급	1	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7급	5	행정2, 시설3
		8급	7	시설7
		9급	1	시설1
	기능직	소계	1	
		10급	1	사무보조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농 수 산 과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4	농업2, 해양수산1, 행정(계약)1	
		7급	5	행정1, 농업2, 해양수산1, 농업·수의·해양수산1	
		8급	6	시설2, 농업2, 행정·농업1, 농업·수의·해양수산1	
	시 설 재 난 관 리 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6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시설1, 행정·시설2
7급			6	행정3, 시설3	
8급			3	시설2, 방송통신1	
9급			2	행정1, 공업1	
기능직		소계	3		
		7급	1	기계1	
		8급	1	기계1	
	9급	1	사무보조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과 관련 별표 1의 북구 본청 실·과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변경

- 기획감사실(감 2명)
 - 행정 : 6급(△1명), 8급(△1명)
- 총무과(감 2명)
 - 행정 : 6급(△1명)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신설 : 행정8급 → 행정8급(계약)1
 - 전 산 : 9급(△1명)
- 평생교육과(증 2명)
 - 행정 : 6급(+1명), 8급(△1명), 9급(+1명)
 - 전 산 : 9급(+1명)
 - 공 업 : 8급(+1명), 9급(△1명)
- 생활지원과(감 2명)
 - 행정 : 8급(△1명), 9급(△1명)
- 경제진흥과(증 2명)
 - 행정 : 6급(+1명), 7급(+1명)
- 환경위생과
 - 환경 : 8급(+1명), 9급(△1명)
- 도시녹지과
 - 녹 지 : 8급(+1명), 9급(△1명)
- 건설과
 - 행정 : 8급(△1명), 9급(+1명)
- 교통행정과(증 1명)
 - 행정 : 9급(+1명)
- 건축주택과
 - 시 설 : 8급(+1명), 9급(△1명)
- 농수산과(증 1명)
 - 행정(계약) : 6급(+1명)
- 시설재난관리과
 - 공 업 : 8급(△1명), 9급(+1명)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8년에 폐지된 행정자치부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로 다시 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 (안 제2조제2항제5호 삭제)
-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고 그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 (별표 개정, 별표 2 신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완 (안 제4조2항, 제3항, 4항제1호 개정)
 - 위원 구성을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고
 - 구청장이 위원 위촉 또는 임명 시 그 대상에 북구의회위원을 포함하며
 - 북구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가 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 (전화:219-7265,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세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 6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하되 취득가액 5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안 제12조의3 제1항 제3호 신설 및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전화:219-7266,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